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0일,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규정(안 제41조의2)

도지사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안 제78조의2)

도지사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63조의2)

도내 글로벌 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등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하여 영주자격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규정(안 84조의2)

도지사가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 102조의2)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도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이광희 의원)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특례가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면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등 자치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 및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